복음언약장로교(ECO) Blue Water 노회 산호세온누리교회 내규

제 1조 비전과 사명 (Statement of Mission)

본 산호세온누리교회 (이하 "교회"라 칭함)의 비전은 "생명을 주는 교회(Life-Giving Church)이다. 본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통해 이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죽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직장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드러나고 더 나아가 산호세 지역과 그 이상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에스겔 47 장 1-12 절)

제 2조 소속 노회 및 정치 형태 (Relation to the ECO and Governance)

본 교회는 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ECO), 이하 "교단"이라 칭함) Blue Water 노회에 속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교단의 헌법(교단의 필수강령(the Essential Tenets), 규례서(the Polity), 권징조례(the Rules of Discipline)를 통칭함)을 따르며, 또한 미국내 한국계 이민교회로서 특수한 입장이 있음을 인정하며, 성경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죄로 인정한다.

제 3 조 교인(Membership)

3.1. 교인의 가입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교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단, 본 교회는 교단의 필수강령에 명시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교인 가입 혹은 활동에 제한을 가하거나, 교인 명부에서 제명할 수 있다.

3.2. 교인의 분류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으로 분류되며, 당회는 매년 교인명부를 점검하고 정리해야 한다.

- i. 등록교인: 본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인이다.
- ii. 세례교인(Baptized Member): 세례교인은 본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든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입교)을 하지 않은 교인, 즉 유아세례교인을 말한다.
- iii. 활동교인(Covenant Partner): 활동교인은 유아세례를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입교)을 하거나 성인세례를 받은 교우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한 후, 당회가 주관하는 새가족반을 이수하고, 교회의 치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만 18 세이상 교인이다.

3.3. 교인의 의무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의 예배와, 교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사역에 각자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3.4. 교인의 권리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i. 등록교인: 목회적 보살핌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공예배와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회의 회원권(발언권, 투표권, 피선거권)은 없으나,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 ii. 세례교인 (Baptized Member): 목회적 보살핌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공예배와 교회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회의 회원권(발언권, 투표권, 피선거권)은 없으나,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 iii. 활동교인 (Covenant Partner): 공예배와 교회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동회의 회원권 (발언권, 투표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5. 교인의 자격 정지

3.5.1. 등록교인 자격 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에 따라 등록교인 자격이 상실된다. 등록교인의 회복은 재 등록이 필요하며 재 등록시 등록교인의 자격을 바로 회복한다.

- i. 특별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 ii. 정식 이명 절차를 통해 교적을 타교회로 이전하거나 타 교회에 등록한 경우.
- iii. 신앙적, 도덕적으로 본 교회에 심각한 문제와 폐해를 일으킨 경우.

3.5.2. 활동교인 자격 정지: 당회는 특정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공예배에 불참한 활동교인에 대하여 활동교인의 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활동교인의 자격회복은 3개월 유예기간후 당회의 결정을 통해 활동교인의 자격을 회복한다. 특정한 사유(파견, 출장, 병가등)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는 경우 당회에 보고시 결석기간동안은 활동교인 자격이 정지되며 복귀시 당회의 결정을 통해 활동교인 자격을 회복한다. 등록교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기존 활동교인이 재등록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 후 당회의 결정을 통해 이전 자격을 회복한다.

제 4 조 공동의회 (Congregational Meetings)

4.1. 공동의회의 구성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의 모든 활동교인으로 한다.

4.2. 연례회의와 임시회의

본 교회는 매년 1월중 주일에 연례 공동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시회의시 다루어 지는 안건은 그 회의가 소집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공동회의의 장소는 반드시 본 교회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4.3.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나 노회에 의해 소집되어야 하며, 또한 활동 교인의 1/4 의 서면 요청이 있을때,

당회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공동회의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을 2주일전에 주일예배중에 혹은 주보를 통해 공고하되 특별한 사안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4.4. 공동의회 안건

다음과 같은 안건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 되어야 하며 추가로 당회의 요청에 따라 공동의회 결정이 필요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i.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
- ii. 담임목사, 협력목사의 청빙 및 목회자 관계 해소
- iii. 부동산의 구매, 융자, 이전, 매각
- iv. 교단 혹은 노회 소속 변경 및 탈퇴
- v. 교회의 정관 혹은 본 내규 수정
- vi. 연간 예산 및 결산 보고
- vii. 교회의 해산 혹은 합병
- viii. 감사 선출

4.5. 공동의회 개회성수

공동의회의 개회성수는 총 활동 교인의 1/4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공동의회 중에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개회성수의 4/5 이상이 되어야 한다.

4.6. 공동의회 결의

공동회의에 참석한 모든 활동교인은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투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되거나 혹은 대리투표를 하도록 할 수 없다. 공동의회의 결의는 본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present and voting) 활동교인의 과반수로 한다.

4.7. 의장과 서기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각각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담임 목사가 의장을 맡기 어려운 경우나 담임목사와 관련이 있는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경우 담임목사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회자나 장로에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회서기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공동회의에 한해 공동회의 서기를 시무장로중에 임시로 선출할 수 있다. 서기는 반드시공동회의의 결정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5조 당회 (The Session)

5.1. 당회의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 협력목사(Associate Pastor) 그리고 시무장로들로 구성되며, 담임목사와 최소 세명의 시무장로들로 구성된다.

5.2. 당회장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회장의 직무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당회원 중 한명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여 당회를 주재할 수 있다.

5.3. 당회서기

당회서기는 당회에서 시무장로중 한사람을 선출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i. 본 내규에 별도로 명시가 없는 한, 당회와 공동의회의 모든 결정사항들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 ii. 등록교인과 활동명부 및 교인의 결혼, 사망, 세례 기록을 관리, 보관한다.
 - iii. 당회의 요청에 의해 이명 증서를 발부한다.
 - iv. 당회 업무에 관련된 모든 서신과 공문의 철을 보관한다.
- v. 본 내규 제 18 조 의무보고와 관련해 교회가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 당국에 보고한다.

5.4. 당회의 직무

당회는 교회의 공의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기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 i.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예배와 교육의 장소 및 목회자 제공한다
- ii. 성찬과 세례예식이 정기적으로 바르게 진행되도록 감독한다
- iii. 새로운 교인의 정착과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케 한다.
- iv. 상회 (노회/총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계를 유지하며 노회에 총대들을 선출해 보내며 보고받는다.
 - v. 정기적으로 교인 명부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 vi. 연간 예산을 수립, 집행 감독하며 교회 운영에 필요한 보험을 유지한다.
- vii. 14.7 항 에 따라 매년 재정감사(financial review) 를 진행케 하며, 감사결과를 공동의회와 노회에 보고한다.
- viii.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평가하고 이를 노회에 보고해 노회와의 상호 협력를 도모한다.

5.5. 당회 회의

당회는 정기회의를 최소한 분기별, 일년에 4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한 당회장의 요청이나, 노회의 지시, 혹은 당회원 두명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시,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5.6.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의 2/3 의 출석으로 한다.

5.7. 당회의 결의

당회의 결의는 본 내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하여 투표한(present, voting) 당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5.8. 회의록과 기록

당회는 당회 회의록 및 결의안, 교인 명부, 교회의 모든 공회의의 기록, 기타 당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교회 기록부을 유지해야 한다. 활동교인과 노회는 당회에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 6 조 집사회 (The Board of Deacons)

6.1. 집사회의 구성

집사회는 시무안수집사로 구성된다. 집사회는 당회의 자문과 감독을 받는다. 집사회는 시무안수집사 중 회장과 서기를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6.2. 집사회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i. 당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 ii. 예배. 친교. 봉사. 구제. 관리의 책임을 수행한다.
- iii. 각 위원회와 제반 부서의 정보 및 활동사항을 교환, 상호 협력한다.
- iv. 집사회의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6.3. 집사회 회의

집사회 회의는 정기회의를 최소한 연 2 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한 임시회의는 담임목사 혹은 당회의 요청이나 집사회의 1/3 이상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에서 처리될 의제는 회의소집시 기술한 안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기 집사회 회의의 소집은 최소 일주전의 통보로 집사회장이 소집한다.

6.4. 집사회 회의 개회 성수

집사회의 개회 성수는 전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6.5. 집사회 회의 결의

집사회 회의의 결의는 본 내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present, voting)한 집사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7조 권사회 (The Board of Kwonsa/Senior Deaconess)

7.1. 권사회의 구성

권사회는 미국내 한인 교회의 특수성을 갖는 직분과 모임이며 시무권사로 구성된다. 담임목사는 권사회의 자문이 되며, 권사회는 당회의 감독을 받는다. 권사회는 권사중에 회장과 서기를 선출하며 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7.2. 권사회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i. 교역자를 도와 어려운 가정을 심방하여 성도의 가정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며, 권면한다.
- ii.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민도록 모범을 보이고, 격려하고, 돌아보며, 훈계하고 양육한다. 교회의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를 돕는다.

iii.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와 말씀공부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사업에 힘쓴다.

7.3. 권사회 회의

권사회 회의는 정기회의를 최소한 연 2 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한 임시회의는 담임목사 혹은 당회의 요청이나 권사회의 1/3 이상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에서 처리될 의제는 회의소집시 기술한 안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기 권사회 회의의 소집은 최소 일주전의 통보로 권사회회장이 소집한다.

7.4. 권사회 회의 개회 성수

권사회의 개회 성수는 전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7.5. 권사회 회의 결의

권사회 회의의 결의는 본 내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권사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8조 교회 직원 (Staff of the Church)

- 8.1. 구성: 교회직원은 전임목사, 목회직원, 사무직원을 칭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i. 전임목사는 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풀타임 목사
- ii. 목회직원은 특정한 목회 수련을 받고 목회관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 (예. 하프타임 및 파트타임 교역자)
 - iii. 사무직원은 행정직원과 관리직원을 포함한다.

8.2. 전임 목사

8.2.1. 전임 목사의 역할

목사는 신앙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엡 4:12). 또한 노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다양한 사역을 담당하며, 말씀의 설교자와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인들이 복음의 모범에 맞추어 살고 증거와 봉사를 위해 강건해 지도록 교회의 신앙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세례식과 성만찬상에서 섬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을 향해 교인들의 비젼이 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담임 목사는 또한 교인들이 일상 삶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교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8.2.2. 전임 목사의 자격

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자격요건을 따른다. 타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라도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수를 받았으면, 본교회의 내규에 따라 청빙을 받은경우 목사 자격을 인정한다.

8.2.3. 전임 목사의 구분

- i. 담임목사: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 주관으로 취임하며, 성찬과 세례를 주관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모든 책무를 감당한다. 당회와 공동의회 의장을 맡는다.
 - ii. _ 협력목사 (Associate Pastor): 청빙 절차를 통해 당회 요청으로 노회에 의해

취임하며, 당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특정 사역을 담당한다.

iii. 부목사 (Assistant Pastor): 당회가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당회에 의해 채용될 수 있으며, 교회 전체 사역에서 담임목사를 돕는다.

8.2.4. 전임 담임목사의 청빙

- i. 담임목사, 협력목사: 당회는 목사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목사청빙위원회는 후보자의 장점 및 적합성과 청빙수락 가능성에 대해 그 결정된 사항을 당회에 통보 한다. 이에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해 투표한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청빙을 결정한다.
- ii. 부목사: 당회는 목사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목사청빙위원회는 후보자의 장점 및 적합성과 청빙수락 가능성에 대해 그 결정된 사항을 당회에 통보하며, 당회가 결정한다.

8.2.5. 전임목사의 임기

- i. 담임목사의 임기: 담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무기한 임기로, 또는 필요에 따라 임기를 정할 수 있다. 임기를 정할 경우 그의 임기는 최고 10년 이내의 임기로 정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임기 종료 최소 3개월 전 당회의 결정후 공동의회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를 노회에 통보한다.
- ii. 협력목사의 임기: 협력목사로 청빙할 경우 최고 10 년 이내의 임기로 당회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임기 종료 최소 3 개월 전 당회의 결정후 공동의회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를 노회에 통보한다.
- iii. 부목사의 임기: 부목사로 청빙할 경우 최고 5년 이내의 임기로 당회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연임은 당회가 결정 할 수 있다.

8.2.6. 전임목사의 사임, 해임 및 목회관계 해소

- i. 전임목사의 사임: 재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할 경우에는 적어도 1 개월 전에 사의를 당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ii. 교단소속 전임목사의 해임 및 목회관계 해소: 교단소속 전임목사의 해임과 목회관계 해소에 대한 권한은 노회에 있으며, 교회에서 이를 노회에 요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당회는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이를 노회에 요청 한다.
- iii. 타교단 소속 전임목사의 해임 및 목회관계 해소: 타교단 소속 전임목사의 해임과 목회관계 해소에 대한 권한은 당회에 있으며, 당회에서 그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 iv. 전임목사의 정년 은퇴는 만 67 세로 한다.

8.3. 전임목사의 안식년

매 6 년 마다 담임목사는 6 개월, 협력목사 및 부목사는 3 개월의 안식 기간을 갖도록 하며, 그기간 동안 수양과 신학 연구를 통해 몸과 마음, 영혼을 갱신하는 기회를 취하도록 한다

8.4. 목회 직원과 사무 직원의 채용, 관리, 해임

8.4.1. 목회 직원과 사무 직원의 채용: 전임목사를 제외한 모든 교회직원은 당회에서 청빙위원회 혹은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 후보자를 당회에 추천하고, 당회는 해당 후보자의 청빙 혹은 채용을 결정한다.

8.4.2 목회 직원과 사무 직원의 관리: 모든 목회 직원과 사무 직원은 당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으며, 당회의 요청에 의해 교회 부서 및 기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8.4.3 목회 직원과 사무 직원의 해임: 당회는 목회 직원과 사무직원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직제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Elected Church Officers)

9.1. 직제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를 위한 공천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공천위원회는 시무장로/권사/안수집사, 사역(휴무)장로/권사/안수집사, 본 교회 은퇴장로/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최근 5 년간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목자 혹은 부장으로 각 3 년이상 봉사한 자들로 구성된다. 공천위원회의 임무는 당회의 요청으로 9.2 항의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를 추천하는 일이다. 당회는 당회원 중 한명을 공천위원회으로 임명한다.

9.2. 직제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공천 절차

9.2.1. 전체 명단 준비

교회 사무행정부에서 '부칙: 직제사역자(장로, 권사, 안수집사)후보 공천을 위한 기본자격심사항목 (별첨)'중 기본연한과 목양 및 봉사기준을 만족하는 전체 명단을 준비하여 공천위원들에게 최소 1 주전에 배포한다.

9.2.2. 공천대상자 선출

공천위원들은 과반수 이상 참여한 회의에서 당회에서 요청한 인원수만큼 무기명으로 투표한 후, 과반수이상 득표한자를 대상으로 다득표순으로 장로/권사는 2 배수, 안수집사는 정수로 공천대상자를 선출한다. 과반수이상 득표한자 수가 장로/권사후보는 2 배수, 안수집사 후보는 정수가 되지 않더라도 재투표하지 않는다.

9.2.3. 공천후보자 추천

공천위원회는 선출한 공천대상자 중 다득표순으로 수락서를 받아 정수 공천후보자를 정한다, 만일 공천대상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만큼 차점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한후 공천후보자를 추천한다.

9.2.4. 공천자 최종 확정

당회는 수락서를 제출한 모든 공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칙: 직제사역자(장로, 권사, 안수집사)후보 공천을 위한 기본자격 심사항목 (별첨)' 중 청지기적 삶과 예배하는 삶에 대해 심사후 공천자를 최종 확정한다.

9.2.5. 현장 공천은 하지 않는다.

- 9.3. 직제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의 기본자격
- 9.3.1. 성경적 원리에 근거(딤전 3:1~13)한다.
- 9.3.2. 장로의 기본 자격은 선거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입교(세례)후 만 7년,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5년 이상된 안수받은 집사, 권사, 장로.
- 9.3.3. 권사의 기본 자격은 선거 당해년도 1 월 1 일을 기준으로 입교(세례)후 만 7 년,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5 년 이상된 여성 성도로서 서리집사 또는 안수집사로 봉사한 자로, 만 50 세 이상된 성도.
- 9.3.4. 안수집사의 기본 자격은 선거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입교(세례)후 만 5년, 본교회에 등록한 지 만 3년이상 경과한 성도로서 서리집사로 봉사한 자.

9.4. 직제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의 공천기준

은사와 자격 갖춘 직제사역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칙을 마련하여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직제사역자(장로, 권사, 안수집사)후보 공천을 위한 기본자격 심사항목 (별첨)]

- 9.5. 직제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의 임기에 관한 기준
- 9.5.1. 시무장로 임기는 6년이며 이후 최소 1년의 안식년을 가진다.
- 9.5.2. 직제사역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매 3 년마다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당회의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다.
- 9.5.3. 안수집사와 권사의 경우 별도의 임기와 휴무 규정은 없으며 본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당회의 허락을 받아 한번에 최고 1 년까지 휴무할 수 있다.
- 9.5.4. 산호세온누리교회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되어 안수 혹은 취임 받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본교회의 교단이 변경되더라도 본교회 안수사역의 직제와 책임이 지속된다. 단, 사역(휴무)직제자가 시무직제자로 다시 사역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은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 재선출되어야 하며, 그 외의 직제자는 사역(휴무) 직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 9.6. 직제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의 숫자에 대한 기준
- 9.6.1. 장로: 공천일을 기준한 활동교인 70 명당 1 명의 비율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정한다.
- 9.6.2. 권사: 공천일을 기준한 활동교인 30 명당 1 명의 비율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정한다.
- 9.6.3. 집사: 공천일을 기준한 활동교인 10 명당 1 명의 비율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정한다.

9.7. 선거방법

- 9.7.1. 장로는 공천된 사람중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득표한 사람을 선출한다.
- 9.7.2. 권사와 안수집사는 공천된 사람중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9.7.3. 필요한 숫자만큼의 직제사역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라도 당해년도에는 재투표(선거)를 하지 않는다.

9.8. 피택 임직자 사역준비

- 9.8.1. 교인들이 직제사역자(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선출 되었을 때, 당회는 그들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한다.
- 9.8.2. 당회에서는 피택자 개인적 신앙, 교단 헌법에 내포된 교리, 정치, 권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역의 의무에 대하여 숙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직제자 고시)
- 9.8.3. 당회는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기꺼이 담당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과 협의해야 한다.
- 9.8.4. 당회는 안수식과 취임식 날짜를 정하고, 직제자고시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 안수 및 취임식을 진행한다.
- 9.8.5. 교회 형편을 고려하여 당회의 결정에따라 안수식과 취임식을 먼저하고 임직자 교육을 나중에 진행 할 수 있다.

9.9. 직제 사역자의 은퇴

직제사역자(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만 67 세에 정년은퇴 한다. 단, 본인이 그 이전이라도 은퇴를 원할 경우 당회의 심의를 거쳐 은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0조 임명직 사역자 (서리집사)

- 10.1. 서리집사: 서리집사직은 안수집사를 준비하는 직책으로 (딤전 3: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서리 집사는 본교회 등록 교인이 된지 만 1년 이상된 세례교인 중에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하고, 본교회에서 주관하는 당회에서 정한 양육과정을 마친 자들 중에 신청을 받아 임명한다.
- i. 당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고 서리집사의 직무를 담당케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ii.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 사역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사역부서 (Departments of Ministry)

- 11.1. 구성: 당회는 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사역영역과 부서를 구성하며, 각부의 부서장 및 부서원을 임명한다. 모든 부서는 당회의 지도와 감독하에 그 업무를 수행한다. 당회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역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11.2. 사역자 회의: 부서간의 원활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 사역부서의 부장 (대장), 차장 (총무), 팀장들과 모든 직제사역자들은 분기별로 사역자회의를 갖는다.

제 12 조 특별 위원회 (Special Committees)

당회는 교회의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한다. 각 위원회는 당회의 지도와 감독하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특별 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당회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i. 예산 위워회
- ii. 청빙 위원회
- iii. 공천 위원회
- iv. 건축 위원회
- v. 장학 위원회
- vi. 선교 위원회
- vii. 선거관리 위원회

제 13조 교회 기관 (Church Organizations)

당회는 교회의 특별한 사역과 필요에 따라 부설 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4 조 재정 (Finance)

14.1. 헌금

교회의 운영은 교인의 십일조와 기타 자발적인 헌금에 의하여 운영하며 모든 교인은 교회재정에 적극 동참한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당회는 이를 위해 헌금의 수입과 그 지출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14.2. 교회 재산 소유권

교회의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비영리단체로서의 교회법인에게 속하며, 교회재산의 명의나 관련된 제반 서류 및 문건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법인의 이사회로서 교회의 재산과 관련된 제반 거래 및 계약을 공동회의의 결의에 따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4.3. 교회 재산 이전, 처분, 정리

교회 재산은 본 내규에 근거한 결정 없이는 다른 법인체나 기관으로 이전될 수 없으며 교단과의 결별 시에도 교회 재산을 지키며 교단 이전은 교회 해산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교회 해체는 교회가 교회와 비영리 법인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며 해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해체 시의 재산 처분과 정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i. 교회의 법적 책임 해소와 금전적 채무의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ii. 교회 해체 시 반환, 이전, 양도의 조건으로 위탁된 재산에 대해서 요건에 따라 반환토록 한다.
- iii. 반환의 의무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회가 정한 절차를 따라 미연방조세법 501C(3) 조항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 중 본 교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토록 하며 어떠한 재산도 당회원이 관련된 단체에 이전되어서는 안된다.
- iv. 미정리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 처분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14.4. 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14.5. 예산

예산위원회는 매년 12월중 다음해 예산안을 책정하고 수립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는 해당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연례공동의회시 교인들에게 알린다. 단, 교회의 모든 사역자 및 직원, 사례 받는 성도의 사례비는 공동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6. 결산

결산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0 일 안에 감사 결과와 함께 당회에서 보고하며, 당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에게 그 결과를 알린다.

14.7. 감사

감사는 공인회계사이거나 회계절차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일년에 한번 이상 교회 재정과 회계에 대한 감사 (Financial Review)를 실시하고, 감사후에는 감사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14.8. 지출

각 부서와 기관은 예산에 근거하여 재정지출 지침을 따라 신청하며 재정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2 명의 등록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수표가 발행된다. 모든 지출에 대한 요청은 지출 내역과 관련 근거서류(청구서와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14.9. 회계 관리 및 기록

본 교회의 회계(Treasurer)는 재정부가 담당한다. 당회는 재정부장과 부원을 선출, 임명하며, 이를 감독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별로 기록하여 정기당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한다. 재정부는 헌금의 계수를 당일내 마감하고 계수된 헌금은 가장 가까운 은행 업무일내에 입금을 완료해야 한다. 각 개인의 헌금 정보는 당회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유될수 없다.

제 15 조 세례와 성찬식

15.1. 세례

세례식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의 표시이다.

15.2. 성찬식

주님의 지시에 따라 성도들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규례로써, 예수 그리스도안에 믿음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제 16 조 징계 (Discipline)

교인에 대한 교정이나 징계는 교단의 권징조례(The Rules of Discipline)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며, 필요시 당회는 해당 원칙과 절차에 근거해 치리 관련 세칙을 재정할 수 있다.

제 17조 사역 및 재정보고 (Reporting of Projects and Finance)

교회의 모든 기관, 위원회, 부서 및 부속 단체는 연 1 회이상 사역 및 재정보고서를 서면으로 당회에 제출한다.

제 18조 의무적 보고 (Mandatory Reporting)

본 교회의 모든 직제 사역자 및 교회내 교육사역을 담당하는 교회 직원들은, 미성년자나 정신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학대, 유기, 또는 성적 희롱이나 학대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을때는 다음의 경우 교회 당국과 민간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 이러한 정보가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입수하게 되었거나, (2) 보고하는 당사자가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 의무에 묶여 있지 않을때, 또는 (3) 보고해야 할 사람이 판단하기를 장차 신체적위해나 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때이다.

제 19조 일반 규정 (General)

19.1.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당회의 제의나 활동교인 1/4 이상의 서명으로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제출된 개정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제출된 개정안은 공동의회에서 투표한 활동교인의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 한다.

19.2. 해석 권위

본 내규의 해석의 궁극적 권한은 당회에 있다. 당회는 본 내규의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과반수 결정에 따라 그 해석을 노회나 전문가 집단, 혹은 특별 위원회에 그 해석을 자문해 참고할 수 있다.

19.3. 무효화

민사법상 혹은 어떤 이유로 본 내규의 일부 내용이 무효화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무효화 된해당 부분을 제외한 기타 제반 조항은 유효하다.

19.4. 효력

본 내규는 2017년 3월 5일 공동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교회에 이전에 존재한 모든 헌장과 내규는 자동 효력이 소멸되며, 본 내규가 이를 대체한다.

19.5. 상위법

본 교회는 교단 헌법이 본 내규보다 우선함을 인정한다. 교단 헌법과 본 내규의 조항이 서로 상충될 시 교단 헌법을 따른다.

19.6. 번역본 (Translation)

본 내규는 한글본을 원본으로 하며, 영어로 번역본을 둘 수 있다. 한글본과 영어본 사이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한글본을 우선으로 한다.

19.7. 기록/보관 (Records)

교단 헌법과 본 내규, 관련 세칙은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며, 활동교인들이 요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9.8.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회 시행 세칙에 따른다.

CERTIFICATION

본 내규는 2017 년 3 월 5 일 공동의회에서 출석, 투표한 활동 교인의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당회 서기 권오승장로

2017년 3월 5일

*부칙: 직제사역자(장로, 권사, 집사)후보 공천을 위한 기본 자격 심사 항목

평가항목	기준 및 설명
기본연한 기준 일시: 선거 당해 년도 1 월 1 일 기준	● 장로: 세례 받은지 7 년 이상된 입교/세례교인 입교연한 ● 권사: 세례 받은지 7 년 이상된 만 50 세 이상 여성 입교/세례교인 ● 집사(안수집사 이하 집사): 세례받은지 5 년 이상된 입교/세례교인
	 장로, 권사: 등록 후 만 5 년 이상 집사: 등록한지 만 3 년 이상 등록일: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날로 기록된 날짜 1 년이상 장기 외유기간 만큼은 등록연한에서 제외
	** 단, 장로는 정년으로 시무 가능한 임기가 2 년미만인 경우 후보자격이 상실됨
목양 및 봉사 (지난 5 년간)	 장로: 홈목자(마을장) 또는 부장 3 년 이상 권사: 홈목자(마을장) 또는 부장 2 년 이상 집사: 홈목자 또는 부장 2 년 이상 0 부목자, 차장, 팀장 2 년 경력을 목자, 부장 1 년 경력으로 산정함
청지기적인 삶(헌금)	 십일조 생활과 기타 헌금생활을 충실히 함으로 청지기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이 십일조의 충실도는 선거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4년(장로), 3년(권사) 2년(집사)기간 동안 헌금한 십일조의 기록에 근거로 판정하되, 실직과 생활의 어려움 등 개인의 특수사정을 참작할 수 있음 이 기타 헌금 참여도는 선교작정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특별 헌금(부흥회, 선교지원, 구제, 장학)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예배하는 삶	 개인과 직장, 교회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사는 자 주일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회등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자 출장이나 직장 출근 시간등으로 불가피 하게 못나오는 경우는 참작할 수 있음.

*부칙: 2017 년 직제사역자 선출기준 세칙

1. 현재 직제사역자 시무연한

• 2017 년 현재 시무 직제자 (장로, 권사, 집사) 임기는 년말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새로운 임기를 얻기 위해서는 개정된 내규에 따라 직제사역자 선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개정된 내규에 따른 공천 위원 (총 63 명)

- 시무장로: 고동욱, 권오승 (2명), 사역(휴무)장로: 도한철, 송영철, 정일형(3명), 은퇴장로: 권승도, 심호섭 (2명), 시무권사: 박재연, 송정자 (2명), 사역(휴무)권사: 김경자, 김동연, 김제시카, 김진희, 김해옥, 심경선, 오화련, 유경희, 유춘화 (9명), 시무안수집사: 고장환, 권석원, 김복수, 류정민, 석영숙, 유기혁, 장철하, 정원보 (8명) 사역(휴무)안수집사: 고사라, 김선영, 김성주, 김호빈, 박청아, 유광림, 정돈희, 정대석, 조우석, 최성연, 황미옥, Glenn Inn (12명) 총 38명
- 목자(직제자 제외): 고광희, 고명준, 고은영, 김기헌, 김동순, 김연희 A, 김영민, 김지현 A, 김정연 B, 노성자, 노평근, 박수정 A, 박은아, 송중분, 송태화, 윤민희, 윤승국, 윤완석, 이근석, 이재희, 장수미, 현명은 총 22 명
- 부장(직제자 및 목자제외): 김윤민, 김혜진, 문태훈 총 3명

3. 시무장로 임기

- 개정된 내규상 시무장로 임기는 6 년이지만 3 년마다 선거를 통해 균등한 숫자의 시무장로수를 유지하기 위해 2017 년 시무장로 선거에서는 3 년임기조와 6 년임기조를 나누어 선출한다
- 3년 임기조와 6년 임기조 선출 숫자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 3년 임기조는 2017년 현재 시무장로가 재 선출된 경우를 우선으로하고 부족한 경우 득표수가 작은 순서로 결정한다

4. 직제 사역자 시무 개시

• 2017 년도 시무년수는 임직 및 취임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1 년으로 간주하다

5. 시무장로 숫자

• 개정 내규 기준 당회 구성을 위한 최소 시무장로 숫자는 3 명이지만, 2017 년 시무직제자 선출을 통해 당회원 추가 전까지는 시무장로 2 명으로 당회가 유지된다

(이 상)